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 번호	9286
----------	------

제안연월일 : 2014. 2. 6.

제안자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제321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6차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2014. 1. 28)는 제1차 소위원회(2014. 1. 8), 제2차 소위원회(2014. 1. 14), 제3차 소위원회(2014. 1. 16), 제4차 소위원회(2014. 1. 21) 및 제5차 소위원회(2014. 1. 23)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321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교육자치관련법 심사소위원회(2014. 1. 28)는 제1차 소위원회(2014. 1. 9), 제2차 소위원회(2014. 1. 13), 제3차 소위원회(2014. 1. 15) 및 제4차 소위원회(2014. 1. 23)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21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14. 1. 28)에서 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원회와 교육자치관련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통합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제322회국회(임시회)에서 다시 구성된 제1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14. 2. 4)에서 종전 위원회안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여 새로운 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금권선거를 조장하는 선거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언론사 등이 선거보도심의기구의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전과기록 및 공직입후보경력 등 후보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투표 종료시각을 2시간 연장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그 밖에 투표·개표 등 선거사무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관·단체에 대하

여 선거관리위원회 협조의무를 강화하는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조의2 및 제261조제4항제1호 신설).

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다.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함(안 제19조제5호).

라.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마.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당원협의회 대표자 포함)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봄(안 제4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는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으로 확대하고, 과거 공직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경력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제5호·7호 신설).

사.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5조제1항 신설)

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08조제7항 및 제8항 등).

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장소 확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추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추천에 관하여 학교 등 기관·단체의 협조의무를 강화 또는 신설하고, 투표소 등 장소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투표관리관 및 투개표사무원 등 추천 협조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안 제146조의2제3항, 제147조제10항, 제174조제3항 및 제261조제5항 신설 등).

차.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함(안 제 155조제2항)

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0조, 제231조, 제232조 등 및 제261조제1항 신설).

타.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제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함(안 제256조제2항).

파.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함(안 제268조제3항 신설).

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외)를 현행 651명에서 12명 증원된 663명으로 함(안 별표 2).

거.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기초의원정수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정수표를 조정함(안 별표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각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제22조의 조번호 및 제목과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 후보자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

원[「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4항제5호 중 “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제49조제12항 본문 중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85조의 조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를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
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제10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

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제108조제9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08조제11항(중전의 제9항) 중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35조의2제3항 중 “제261조제6항”을 “제261조제9항”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7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8조제4항 중 “설비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 중 “오후 4시”를 “오후 6시”로 한다.

제15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를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로 한다.

제1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재자투표기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61조제6항제2호”를 “제261조제9항제2호”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1千500萬圓”을 “5천만圓”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千500萬圓”을 “5천만圓”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千萬圓”을 “3천만圓”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천만圓”을 “500만圓 이상 3천만圓”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600만圓”을 “1천만圓”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천만圓”을 “3천만圓”으로 한다.

제2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圓”을 “5천만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선한 者”를 “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3千萬圓”을 “7천만圓”으로 한다.

제2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千萬圓”을 “5천만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千萬圓”을 “7천만圓”으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9호 중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舉運動禁止)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를 “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 ⑤ 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圓 이상 5천만圓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6조제1항제2호 중 “제108조제4항”을 “제108조제5항”으로,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를 “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로 한다.

제2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제256조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과목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7항”을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으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57조제2항 중 “제261조제6항제1호”를 “제261조제9항제1호”로 한다.

제260조제1항 본문 중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을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으로 한다.

제26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 또는 보도한 자(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3항(중전의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를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로 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제2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1조제7항(중전의 제4항)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261조제10항(중전의 제7항) 후단 중 “제5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제6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61조제11항(중전의 제8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7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한다.

제262조의2제1항 중 “제261조제6항”을 “제261조제9항”으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제256조제1항·제2항”을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제271조제3항 중 “제261조제7항”을 “제261조제10항”으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제11호 및 제3항”을 “제11호 및 제3항·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의8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 후 20일 이내에 설치·운영한다.

② 제8조의8제6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설치 후 2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구시·도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를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북구지역, 해운대구기장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해운대구지역,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서구지역 및 경상북도 포항시남구울릉군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는 포항시지역을 각각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간주하여 지역구시·도의회의원정수를 산정한다.

제4조(지역구시·도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서는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강서구제1선거구와 강서구제2선거구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일부를 분할하

여 각각 영월군제1선거구와 영월군제2선거구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일부를 분할하여 각각 거창군제1선거구와 거창군제2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별 의원 1명당 인구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치구·시·군은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특례)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후보자등록 경력의 제출에 관한 제49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26일 실시한

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경력 등부터 적용한다.

제8조(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9조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0조의2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제6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신고와 공표·보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고는 제10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는 제10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공표하기 전까지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공소시효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63명)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96)	
종로구 제1선거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 평창동, 무악동, 교남동, 가회동
종로구 제2선거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창신제3동, 승인제1동, 승인제2동
중구 제1선거구	소공동, 명동, 광희동, 을지로동, 신당동, 신당제5동, 동화동, 황학동, 중림동
중구 제2선거구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약수동, 청구동
용산구 제1선거구	남영동, 청파동, 원효로제1동, 원효로제2동, 효창동, 용문동, 한강로동, 이촌제1동, 이촌제2동
용산구 제2선거구	후암동, 용산2가동, 이태원제1동, 이태원제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성동구 제1선거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성동구 제2선거구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성동구 제3선거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성동구 제4선거구	마장동, 사근동, 송정동, 용답동
광진구 제1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광진구 제2선거구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 제3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광진구 제4선거구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 제1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동대문구 제2선거구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 제3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동대문구 제4선거구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 제1선거구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7동, 망우제3동
중랑구 제2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5동, 상봉제2동
중랑구 제3선거구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묵제1동, 묵제2동
중랑구 제4선거구	상봉제1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 제1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돈암제2동
성북구 제2선거구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 제3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성북구 제4선거구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 제1선거구	번제1동, 번제2동, 수유제2동, 수유제3동
강북구 제2선거구	수유제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 제3선거구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강북구 제4선거구	미아동, 송중동, 번제3동
도봉구 제1선거구	창1동, 창4동, 창5동
도봉구 제2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2동, 창3동
도봉구 제3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3동
도봉구 제4선거구	방학1동, 방학2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 제1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노 원 구 제2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노 원 구 제3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노 원 구 제4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노 원 구 제5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노 원 구 제6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 평 구 제1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은 평 구 제2선거구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 평 구 제3선거구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진관동
은 평 구 제4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대조동, 역촌동
서 대 문 구 제1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서 대 문 구 제2선거구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 대 문 구 제3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서 대 문 구 제4선거구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 포 구 제1선거구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 포 구 제2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마 포 구 제3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마 포 구 제4선거구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 천 구 제1선거구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양 천 구 제2선거구	목1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 천 구 제3선거구	신월1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7동
양 천 구 제4선거구	신월2동, 신월6동, 신정3동, 신정4동
강 서 구 제1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강 서 구 제2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우장산동
강 서 구 제3선거구	가양제1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 서 구 제4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3동, 가양제2동, 가양제3동
구 로 구 제1선거구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가리봉동
구 로 구 제2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5동
구 로 구 제3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구 로 구 제4선거구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금 천 구 제1선거구	가산동, 독산제1동, 독산제2동, 독산제3동, 독산제4동
금 천 구 제2선거구	시흥제1동, 시흥제2동, 시흥제3동, 시흥제4동, 시흥제5동
영 등 포 구 제1선거구	영등포본동, 도림동, 문래동, 신길제3동
영 등 포 구 제2선거구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영 등 포 구 제3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7동
영 등 포 구 제4선거구	신길제6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 작 구 제1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4동
동 작 구 제2선거구	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 작 구 제3선거구	상도제1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동 작 구 제4선거구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관악구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관악구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관악구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관악구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 제1선거구	잠원동, 반포1동, 반포3동, 반포4동
서초구 제2선거구	반포본동, 반포2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 제3선거구	서초2동, 서초4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서초구 제4선거구	서초1동, 서초3동, 방배2동, 방배3동
강남구 제1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강남구 제2선거구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강남구 제3선거구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일원2동
강남구 제4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송파구 제1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 제2선거구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송파구 제3선거구	삼전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 제4선거구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제5선거구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송파구 제6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장지동
강동구 제1선거구	강일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강 동 구 제2선거구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길동
강 동 구 제3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강 동 구 제4선거구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42)	
중 구 선거구	중구 일원
서 구 제1선거구	동대신제1동, 동대신제2동, 동대신제3동, 서대신제1동, 서대신제3동, 서대신제4동, 부민동
서 구 제2선거구	아미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제1동, 남부민제2동, 암남동
동 구 제1선거구	초량제1동, 초량제2동, 초량제3동, 초량제6동, 수정제1동, 수정제2동, 수정제4동
동 구 제2선거구	수정제5동, 좌천제1동, 좌천제4동, 범일제1동, 범일제2동, 범일제4동, 범일제5동
영 도 구 제1선거구	남항동, 영선제1동, 영선제2동, 신선동, 봉래제1동, 봉래제2동, 청학제1동
영 도 구 제2선거구	청학제2동, 동삼제1동, 동삼제2동, 동삼제3동
부 산 진 구 제1선거구	부전제1동, 범전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 산 진 구 제2선거구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 산 진 구 제3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전포제3동, 가야제1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범천제4동
부 산 진 구 제4선거구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동 래 구 제1선거구	수민동, 복산동, 명륜동
동 래 구 제2선거구	온천제1동, 온천제2동, 온천제3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직제3동
동 래 구 제3선거구	안락제1동, 안락제2동, 명장제1동, 명장제2동
남 구 제1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남 구 제2선거구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남 구 제3선거구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남 구 제4선거구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북 구 제1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북 구 제2선거구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북 구 제3선거구	금곡동, 화명제2동
북 구 제4선거구	화명제1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해운대구 제1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중제1동
해운대구 제2선거구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중제2동
해운대구 제3선거구	반여제2동, 반여제3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해운대구 제4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반송제3동
사 하 구 제1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사 하 구 제2선거구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 하 구 제3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사 하 구 제4선거구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금 정 구 제1선거구	서제1동, 서제2동, 서제3동, 금사동, 부곡제1동, 부곡제2동, 부곡제3동, 부곡제4동,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금 정 구 제2선거구	장전제1동, 장전제2동, 장전제3동, 남산동, 구서제1동, 구서제2동, 금성동
강 서 구 제1선거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명지동(1통~15통, 18통~20통)
강 서 구 제2선거구	명지동(16통, 17통, 21통~33통), 녹산동, 천가동
연 제 구 제1선거구	거제제1동, 거제제2동, 거제제3동, 거제제4동, 연산제2동, 연산제4동, 연산제5동

연 제 구 제2선거구	연산제1동, 연산제3동, 연산제6동, 연산제8동, 연산제9동
수 영 구 제1선거구	남천제1동, 남천제2동, 광안제1동, 광안제2동, 광안제3동, 광안제4동
수 영 구 제2선거구	수영동, 망미제1동, 망미제2동, 민락동
사 상 구 제1선거구	삼락동, 모라제1동, 모라제3동, 덕포제1동, 덕포제2동, 괘법동, 감전동
사 상 구 제2선거구	주례제1동, 주례제2동, 주례제3동, 학장동, 엄궁동
기 장 군 제1선거구	기장읍
기 장 군 제2선거구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대구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27)	
중 구 제1선거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중 구 제2선거구	성내2동, 성내3동, 대신동, 남산2동, 남산3동, 남산4동
동 구 제1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동 구 제2선거구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동 구 제3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지저동, 동촌동, 방촌동, 공산동
동 구 제4선거구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서 구 제1선거구	내당1동, 내당2·3동, 내당4동, 평리2동, 평리4동,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서 구 제2선거구	비산1동, 비산2·3동, 비산4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원대동, 평리1동, 평리3동
남 구 제1선거구	이천동, 봉덕1동, 봉덕2동, 봉덕3동, 대명2동, 대명5동
남 구 제2선거구	대명1동, 대명3동, 대명4동, 대명6동, 대명9동, 대명10동, 대명11동
북 구 제1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노원동
북 구 제2선거구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북 구 제3선거구	북현1동, 북현2동, 검단동, 무대조야동
북 구 제4선거구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관음동
북 구 제5선거구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수 성 구 제1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황금1동, 황금2동
수 성 구 제2선거구	만촌2동, 만촌3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 성 구 제3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수 성 구 제4선거구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 서 구 제1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달 서 구 제2선거구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 서 구 제3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달 서 구 제4선거구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 서 구 제5선거구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달 서 구 제6선거구	본리동, 본동, 송현1동, 송현2동
달 성 군 제1선거구	화원읍, 다사읍, 가창면, 하빈면
달 성 군 제2선거구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31)	
중 구 제1선거구	연안동, 신흥동, 도원동, 율목동, 동인천동
중 구 제2선거구	신포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운서동, 용유동
동 구 제1선거구	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4동

동 구 제2선거구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6동, 금창동, 송현1·2동
남 구 제1선거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5동, 주안6동
남 구 제2선거구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7동, 주안8동
남 구 제3선거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남 구 제4선거구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 수 구 제1선거구	송도1동, 송도2동
연 수 구 제2선거구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연 수 구 제3선거구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남 동 구 제1선거구	논현고잔동, 논현1동, 논현2동
남 동 구 제2선거구	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
남 동 구 제3선거구	구월2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구월3동
남 동 구 제4선거구	간석3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5동
남 동 구 제5선거구	만수1동, 만수4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부 평 구 제1선거구	부평1동, 부평4동, 부평5동, 부개1동, 부개2동
부 평 구 제2선거구	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산곡3동, 십정1동, 십정2동, 일신동
부 평 구 제3선거구	갈산1동, 갈산2동, 청천2동
부 평 구 제4선거구	삼산1동, 삼산2동, 부개3동
부 평 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계 양 구 제1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계 양 구 제2선거구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 양 구 제3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 양 구 제4선거구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서 구 제1선거구	검단1동, 검단2동, 검단3동, 검단4동, 검단5동
서 구 제2선거구	검암경서동, 청라1동, 청라2동
서 구 제3선거구	신현원창동, 연희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서 구 제4선거구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강 화 군 선 거 구	강화군 일원
용 진 군 선 거 구	용진군 일원
광주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동 구 제1선거구	충장동, 동명동, 계림1동, 계림2동, 산수1동, 산수2동
동 구 제2선거구	지산1동, 지산2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동, 지원2동
서 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
서 구 제2선거구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서 구 제3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
서 구 제4선거구	상무2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남 구 제1선거구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남 구 제2선거구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봉선1동
남 구 제3선거구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북 구 제1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신안동

북 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북 구 제3선거구	풍향동, 문화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석곡동
북 구 제4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1동, 오치2동, 매곡동
북 구 제5선거구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북 구 제6선거구	삼각동, 일곡동, 양산동, 건국동
광 산 구 제1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동곡동
광 산 구 제2선거구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우산동, 신흥동
광 산 구 제3선거구	신가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광 산 구 제4선거구	비아동, 침단1동, 침단2동, 신창동
대전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동 구 제1선거구	중앙동, 신인동, 효동, 흥도동, 삼성동, 산내동
동 구 제2선거구	대동, 자양동, 판암1동, 판암2동, 용운동, 대청동
동 구 제3선거구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중 구 제1선거구	은행신화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중 구 제2선거구	목동,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중 구 제3선거구	유천1동, 유천2동,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서 구 제1선거구	괴정동, 내동, 가장동, 변동
서 구 제2선거구	도마1동, 도마2동, 복수동, 정림동
서 구 제3선거구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 구 제4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서 구 제5선거구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서 구 제6선거구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 성 구 제1선거구	원신흥동, 온천1동, 온천2동, 진잠동
유 성 구 제2선거구	노은1동, 노은2동
유 성 구 제3선거구	신성동, 진민동
유 성 구 제4선거구	구즉동, 관평동
대 덕 구 제1선거구	오정동, 대화동, 법1동, 법2동
대 덕 구 제2선거구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
대 덕 구 제3선거구	회덕동, 신탄진동, 석봉동, 덕암동, 목상동
울산광역시의회의원(지역구 : 19)	
중 구 제1선거구	북정동, 중앙동, 북산1동, 북산2동, 학성동
중 구 제2선거구	병영1동, 병영2동
중 구 제3선거구	다운동, 태화동, 우정동
중 구 제4선거구	반구1동, 반구2동, 약사동
남 구 제1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5동
남 구 제2선거구	옥동, 신정4동
남 구 제3선거구	삼호동, 무거동
남 구 제4선거구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남 구 제5선거구	달동, 수암동

남 구 제6선거구	대현동, 선암동
동 구 제1선거구	방어동, 화정동, 대송동
동 구 제2선거구	일산동, 전하1동, 전하2동
동 구 제3선거구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북 구 제1선거구	농소1동, 송정동, 강동동
북 구 제2선거구	농소2동, 농소3동
북 구 제3선거구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울 주 군 제1선거구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울 주 군 제2선거구	범서읍, 청량면, 웅촌면
울 주 군 제3선거구	언양읍,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경기도의회의원(지역구 : 116)	
수 원 시 제1선거구	영화동, 연무동, 조원1동, 조원2동, 송죽동, 파장동
수 원 시 제2선거구	울천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수 원 시 제3선거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 원 시 제4선거구	평동, 구운동, 금호동, 입북동
수 원 시 제5선거구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수 원 시 제6선거구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서둔동
수 원 시 제7선거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수 원 시 제8선거구	영통1동, 영통2동, 태장동

수 원 시 제9선거구	원천동, 광고동
성 남 시 제1선거구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 수진1동, 수진2동, 단대동
성 남 시 제2선거구	태평1동, 태평2동, 태평3동, 태평4동, 산성동, 양지동, 북정동, 신촌동, 고등동, 시흥동
성 남 시 제3선거구	성남동, 상대원1동, 상대원2동, 상대원3동, 하대원동, 도촌동
성 남 시 제4선거구	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 남 시 제5선거구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삼평동
성 남 시 제6선거구	수내1동, 수내2동,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성 남 시 제7선거구	정자1동, 정자2동, 금곡동, 구미1동
성 남 시 제8선거구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고 양 시 제1선거구	원신동, 흥도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2동
고 양 시 제2선거구	화정1동,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고 양 시 제3선거구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행신1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 양 시 제4선거구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
고 양 시 제5선거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고봉동
고 양 시 제6선거구	백석1동, 백석2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 양 시 제7선거구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탄현동
고 양 시 제8선거구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부 천 시 제1선거구	원미1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부 천 시 제2선거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2동, 소사동

부 천 시 제3선거구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부 천 시 제4선거구	중동, 상동, 상1동, 상2동, 상3동
부 천 시 제5선거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부 천 시 제6선거구	소사본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부 천 시 제7선거구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부 천 시 제8선거구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안 양 시 제1선거구	안양1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 안양9동
안 양 시 제2선거구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박달2동
안 양 시 제3선거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안 양 시 제4선거구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 양 시 제5선거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범계동, 갈산동
안 양 시 제6선거구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신촌동
안 산 시 제1선거구	사1동, 사2동, 사3동, 본오3동
안 산 시 제2선거구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
안 산 시 제3선거구	일동, 이동, 성포동
안 산 시 제4선거구	부곡동, 월피동, 안산동
안 산 시 제5선거구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선부1동, 선부2동
안 산 시 제6선거구	와동, 선부3동
안 산 시 제7선거구	고잔1동, 초지동

안 산 시 제8선거구	고잔2동, 호수동, 대부동
용 인 시 제1선거구	모현면, 포곡읍, 유림동, 역삼동
용 인 시 제2선거구	중앙동, 양지면, 동부동, 이동면, 남사면, 원삼면, 백암면
용 인 시 제3선거구	마북동, 동백동
용 인 시 제4선거구	보정동, 구성동, 상현2동
용 인 시 제5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기흥동, 서농동
용 인 시 제6선거구	구갈동, 상하동, 상갈동
용 인 시 제7선거구	죽전1동, 죽전2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용 인 시 제8선거구	동천동, 신봉동, 성북동, 상현1동
의 정 부 시 제1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
의 정 부 시 제2선거구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의 정 부 시 제3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의 정 부 시 제4선거구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남 양 주 시 제1선거구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평내동
남 양 주 시 제2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남 양 주 시 제3선거구	진접읍, 별내면, 별내동
남 양 주 시 제4선거구	진건읍, 퇴계원면, 지금동, 도농동,
남 양 주 시 제5선거구	오남읍
평택 시 제1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평택 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통북동, 세교동

평택시 제3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읍, 현덕면
평택시 제4선거구	신평동, 원평동, 비전1동, 비전2동
광명시 제1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
광명시 제2선거구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4동
광명시 제3선거구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
광명시 제4선거구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시흥시 제1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과림동
시흥시 제2선거구	신현동, 매화동, 목감동, 연성동, 능곡동
시흥시 제3선거구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시흥시 제4선거구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 제1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 제2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화성시 제1선거구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화성시 제2선거구	우정읍, 비봉면, 팔탄면, 장안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남양동, 매송면
화성시 제3선거구	진안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병점1동, 병점2동
화성시 제4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면
파주시 제1선거구	탄현면, 교하동, 운정3동
파주시 제2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2동
파주시 제3선거구	파주읍, 월롱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과 주 시 제4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과평면, 적성면, 군내면, 진동면
이 천 시 제1선거구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창전동, 증포동, 중리동, 관고동
이 천 시 제2선거구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구 리 시 제1선거구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1동
구 리 시 제2선거구	교문2동, 수택1동, 수택2동, 수택3동
김 포 시 제1선거구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김 포 시 제2선거구	김포1동, 김포2동, 장기동, 구래동
김 포 시 제3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포 천 시 제1선거구	포천동, 선단동, 군내면,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관인면
포 천 시 제2선거구	소흘읍, 내촌면, 가산면, 일동면, 이동면, 화현면
광 주 시 제1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 주 시 제2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안 성 시 제1선거구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고삼면, 안성3동
안 성 시 제2선거구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안성1동, 안성2동
하 남 시 제1선거구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춘궁동, 감북동
하 남 시 제2선거구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 초이동
의 왕 시 제1선거구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의 왕 시 제2선거구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양 주 시 제1선거구	은현면, 남면, 회천1동, 회천2동, 회천3동, 회천4동

양 주 시 제2선거구	백석읍, 광적면, 장흥면, 양주1동, 양주2동
오 산 시 제1선거구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오 산 시 제2선거구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여 주 시 제1선거구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북내면, 강천면
여 주 시 제2선거구	점동면, 가남읍,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
양 평 군 제1선거구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서종면
양 평 군 제2선거구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강상면, 강하면
동 두 천 시 제1선거구	생연2동, 송내동, 상패동
동 두 천 시 제2선거구	생연1동,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불현동
과 천 시 선 거 구	과천시 일원
가 평 군 선 거 구	가평군 일원
연 천 군 선 거 구	연천군 일원
강원도의회의원(지역구 : 40)	
춘 천 시 제1선거구	강남동, 남면, 남산면, 신동면, 동면, 동내면, 동산면
춘 천 시 제2선거구	석사동, 효자1동, 효자2동
춘 천 시 제3선거구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3동, 교동
춘 천 시 제4선거구	근화동, 북산면, 사북면, 서면, 소양동, 신북읍, 신사우동, 약사명동, 조운동
춘 천 시 제5선거구	퇴계동
원 주 시 제1선거구	지정면, 우산동, 문막읍, 부론면, 귀래면, 호저면

원 주 시 제2선거구	태장1동, 태장2동, 중앙동, 일산동, 원인동
원 주 시 제3선거구	무실동, 단계동, 학성동
원 주 시 제4선거구	단구동
원 주 시 제5선거구	소초면, 행구동, 반곡관설동, 신림면, 판부면, 흥업면
원 주 시 제6선거구	명륜1동, 명륜2동, 봉산동, 개운동
강 릉 시 제1선거구	성산면, 내곡동, 강남동, 구정면, 강동면, 왕산면, 옥계면
강 릉 시 제2선거구	교1동, 교2동, 옥천동, 중앙동, 흥계동
강 릉 시 제3선거구	포남1동, 포남2동, 성덕동
강 릉 시 제4선거구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경포동, 초당동, 송정동
동 해 시 제1선거구	송정동, 북삼동, 북평동, 삼화동
동 해 시 제2선거구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천곡동
태 백 시 제1선거구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태 백 시 제2선거구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 상장동
속 초 시 제1선거구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
속 초 시 제2선거구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
삼 척 시 제1선거구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남양동, 성내동
삼 척 시 제2선거구	원덕읍, 근덕면, 노곡면, 가곡면, 교동, 정라동
홍 천 군 제1선거구	홍천읍, 북방면
홍 천 군 제2선거구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내면

횡 성 군 제1선거구	횡성읍, 공근면, 서원면
횡 성 군 제2선거구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강림면
영 월 군 제1선거구	영월읍(영흥리, 하송리, 방절리, 문산리, 거운리, 삼육리, 연하리),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영 월 군 제2선거구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영월읍(홍월리, 팔괴리, 정양리, 덕포리)
평 창 군 제1선거구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평 창 군 제2선거구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정 선 군 제1선거구	정선읍, 화암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정 선 군 제2선거구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철 원 군 제1선거구	철원읍, 동송읍
철 원 군 제2선거구	김화읍, 갈말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화 천 군 선 거 구	화천군 일원
양 구 군 선 거 구	양구군 일원
인 제 군 선 거 구	인제군 일원
고 성 군 선 거 구	고성군 일원
양 양 군 선 거 구	양양군 일원
충청북도의회의원(지역구 : 28)	
청 주 시 제1선거구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 주 시 제2선거구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우암동
청 주 시 제3선거구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영운동

청 주 시 제4선거구	모충동,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청 주 시 제5선거구	분평동, 산남동
청 주 시 제6선거구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청 주 시 제7선거구	북대제1동, 북대제2동
청 주 시 제8선거구	가경동, 강서제1동
청 주 시 제9선거구	강서제2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운천·신봉동
충 주 시 제1선거구	양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대소원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충 주 시 제2선거구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충 주 시 제3선거구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제 천 시 제1선거구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의암동, 인성동, 용두동, 청진동, 영서동
제 천 시 제2선거구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현동, 신백동, 화산동
청 원 군 제1선거구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강내면, 오송읍
청 원 군 제2선거구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보 은 군 선 거 구	보은군 일원
옥 천 군 제1선거구	옥천읍
옥 천 군 제2선거구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월면, 군서면, 군북면
영 동 군 제1선거구	영동읍, 양강면
영 동 군 제2선거구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학산면
진 천 군 제1선거구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진 천 군 제2선거구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괴산군 선거구	괴산군 일원
증평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음성군 제1선거구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음성군 제2선거구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단양군 선거구	단양군 일원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6)	
천안시 제1선거구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풍세면, 광덕면
천안시 제2선거구	일봉동, 봉명동, 중앙동, 문성동, 신안동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천안시 제4선거구	쌍용2동, 신방동
천안시 제5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천안시 제6선거구	직산읍,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 제7선거구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제8선거구	쌍용1동, 쌍용3동, 불당동
공주시 제1선거구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공주시 제2선거구	유구읍,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평면, 신관동, 월송동
보령시 제1선거구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대천1동, 대천2동
보령시 제2선거구	용천읍,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대천3동, 대천4동, 대천5동
아산시 제1선거구	염치읍,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신창면, 음봉면

아 산 시 제2선거구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아 산 시 제3선거구	선장면, 송악면, 도고면, 온양5동, 온양6동
아 산 시 제4선거구	배방읍, 탕정면
서 산 시 제1선거구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부춘동, 석남동
서 산 시 제2선거구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논 산 시 제1선거구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취암동, 부창동
논 산 시 제2선거구	강경읍, 연무읍, 연산면, 채운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계 룡 시 선 거 구	계룡시 일원
당 진 시 제1선거구	당진1동, 당진2동, 당진3동,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송산면
당 진 시 제2선거구	합덕읍,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악읍
금 산 군 제1선거구	금산읍,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
금 산 군 제2선거구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부 여 군 제1선거구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석성면, 초촌면
부 여 군 제2선거구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서 천 군 제1선거구	장항읍,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서 천 군 제2선거구	서천읍,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중천면, 비인면, 서면
청 양 군 선 거 구	청양군 일원
홍 성 군 제1선거구	홍성읍, 홍북면, 금마면, 갈산면, 구항면
홍 성 군 제2선거구	광천읍,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예 산 군 제1선거구	예산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예 산 군 제2선거구	삽교읍,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태 안 군 제1선거구	태안읍, 원북면, 이원면
태 안 군 제2선거구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전라북도의회의원(지역구 : 34)	
전 주 시 제1선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전 주 시 제2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전 주 시 제3선거구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전 주 시 제4선거구	서신동
전 주 시 제5선거구	효자3동, 효자4동
전 주 시 제6선거구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인후1동, 인후2동
전 주 시 제7선거구	인후3동, 우아1동, 우아2동
전 주 시 제8선거구	송천1동, 덕진동, 호성동
전 주 시 제9선거구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송천2동
군 산 시 제1선거구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옥서면, 옥도면, 소룡동, 미성동, 해신동
군 산 시 제2선거구	성산면, 개정면, 나포면, 서수면, 임피면, 대야면, 구암동, 조촌동, 개정동, 경암동
군 산 시 제3선거구	중앙동, 흥남동, 월명동, 삼학동, 신흥동, 수송동
군 산 시 제4선거구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익 산 시 제1선거구	오산면, 모현동, 송학동,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 마동
익 산 시 제2선거구	남중동, 신동, 함열읍, 황등면, 용안면, 용동면, 함라면, 옹포면, 성당면

익 산 시 제3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삼기면, 영등2동, 삼성동,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익 산 시 제4선거구	동산동, 영등1동, 어양동, 팔봉동
정 읍 시 제1선거구	신태인읍,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감곡면, 연지동, 농소동
정 읍 시 제2선거구	태인면, 용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기동, 초산동, 상교동
남 원 시 제1선거구	운봉읍, 주천면, 산동면, 이백면,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향교동, 도통동
남 원 시 제2선거구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김 제 시 제1선거구	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신흥동, 김산동
김 제 시 제2선거구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요촌동, 교월동
완 주 군 제1선거구	삼례읍,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완 주 군 제2선거구	봉동읍, 용진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진 안 군 선 거 구	진안군 일원
무 주 군 선 거 구	무주군 일원
장 수 군 선 거 구	장수군 일원
임 실 군 선 거 구	임실군 일원
순 창 군 선 거 구	순창군 일원
고 창 군 제1선거구	고창읍,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흥면, 부안면
고 창 군 제2선거구	고수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아산면
부 안 군 제1선거구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백산면
부 안 군 제2선거구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전라남도의회의원(지역구 : 52)	

목포시 제1선거구	원산동, 연산동, 용해동, 상동
목포시 제2선거구	북향동, 죽교동, 산정동, 대성동, 목원동, 유달동, 동명동, 만호동
목포시 제3선거구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목포시 제4선거구	삼향동, 옥암동, 부주동
목포시 제5선거구	부흥동, 신흥동
여수시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국동, 대교동, 월호동
여수시 제2선거구	여서동, 문수동
여수시 제3선거구	한려동, 동문동, 중앙동, 충무동, 서강동, 광림동
여수시 제4선거구	여천동,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여수시 제5선거구	쌍봉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 제6선거구	시전동, 둔덕동, 미평동, 만덕동
순천시 제1선거구	도사동, 별량면, 상사면,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저전동, 장천동, 남제동, 풍덕동
순천시 제2선거구	해룡면, 왕조2동
순천시 제3선거구	덕연동, 조곡동
순천시 제4선거구	왕조1동, 서면
순천시 제5선거구	삼산동, 승주읍, 주암면, 황진면, 월등면, 향동, 중앙동, 매곡동
나주시 제1선거구	남평읍,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나주시 제2선거구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도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광 양 시 제1선거구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광 양 시 제2선거구	중마동, 골약동
광 양 시 제3선거구	다압면, 진상면, 옥곡면, 진월면,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담 양 군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담 양 군 제2선거구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수북면, 대전면
곡 성 군 선 거 구	곡성군 일원
구 례 군 선 거 구	구례군 일원
고 흥 군 제1선거구	고흥읍,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고 흥 군 제2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보 성 군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응치면
보 성 군 제2선거구	별교읍, 검백면, 울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화 순 군 제1선거구	화순읍,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화 순 군 제2선거구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동북면, 남면, 동면
장 흥 군 제1선거구	장흥읍,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장 흥 군 제2선거구	관산읍, 대덕읍, 용산면, 안양면, 회진면
강 진 군 제1선거구	강진읍,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강 진 군 제2선거구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작천면, 병영면, 음천면
해 남 군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해 남 군 제2선거구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영 암 군 제1선거구	영암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영 암 군 제2선거구	삼호읍,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무 안 군 제1선거구	무안읍,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무 안 군 제2선거구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청계면
함 평 군 제1선거구	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엄다면
함 평 군 제2선거구	학교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영 광 군 제1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영 광 군 제2선거구	백수읍, 흥농읍, 염산면, 범성면, 낙월면
장 성 군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장 성 군 제2선거구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완 도 군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완 도 군 제2선거구	금일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금당면, 생일면
진 도 군 선 거 구	진도군 일원
신 안 군 제1선거구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압해읍
신 안 군 제2선거구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구 : 54)	
포 향 시 제1선거구	홍해읍, 송라면, 청하면, 죽장면, 기북면, 신광면, 기계면
포 향 시 제2선거구	용흥동, 양학동, 우창동
포 향 시 제3선거구	두호동, 중앙동, 죽도동
포 향 시 제4선거구	장량동, 환여동

포항시 제5선거구	송도동, 해도동, 상대동, 제철동, 청림동
포항시 제6선거구	연일읍, 대송면
포항시 제7선거구	동해면, 호미곶면, 구룡포읍, 오천읍, 장기면
포항시 제8선거구	대이동, 효곡동
경주시 제1선거구	황성동, 성건동, 중부동, 현곡면
경주시 제2선거구	동천동, 불국동,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황오동, 보덕동
경주시 제3선거구	안강읍, 강동면, 천북면, 용강동
경주시 제4선거구	서면, 건천읍, 산내면, 내남면, 선도동, 황남동, 월성동, 외동읍
김천시 제1선거구	아포읍, 농소면, 남면, 율곡동,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감천면, 조마면, 자산동, 대신동, 지좌동
김천시 제2선거구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평화남산동, 양금동, 대곡동
안동시 제1선거구	풍산읍,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옥동, 송하동
안동시 제2선거구	와룡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용상동, 강남동
안동시 제3선거구	태화동, 평화동, 안기동, 중구동, 명륜동, 서구동
구미시 제1선거구	도량동, 선주원남동
구미시 제2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형곡1동, 형곡2동
구미시 제3선거구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공단1동, 공단2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광평동
구미시 제4선거구	진미동, 인동동
구미시 제5선거구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양포동
구미시 제6선거구	옥성면, 무을면, 선산읍, 고아읍

영 주 시 제1선거구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상망동, 하망동, 영주1동, 영주2동, 가흥1동, 가흥2동
영 주 시 제2선거구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휴천1동, 휴천2동, 휴천3동, 풍기읍
영 천 시 제1선거구	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영 천 시 제2선거구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동부동, 중앙동
상 주 시 제1선거구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북문동, 계림동, 동문동
상 주 시 제2선거구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화남면, 남원동, 동성동, 신흥동
문 경 시 제1선거구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점촌2동, 점촌4동, 점촌5동
문 경 시 제2선거구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점촌1동, 점촌3동
경 산 시 제1선거구	서부1동, 남부동, 남천면
경 산 시 제2선거구	와촌면, 진량읍, 하양읍
경 산 시 제3선거구	서부2동, 북부동, 압량면, 중방동
경 산 시 제4선거구	남산면, 동부동, 용성면, 자인면, 중앙동
군 위 군 선 거 구	군위군 일원
의 성 군 제1선거구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의 성 군 제2선거구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청 송 군 선 거 구	청송군 일원
영 양 군 선 거 구	영양군 일원
영 덕 군 선 거 구	영덕군 일원
청 도 군 제1선거구	청도읍,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청 도 군 제2선거구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고 령 군 선 거 구	고령군 일원
성 주 군 제1선거구	성주읍, 선남면, 월항면
성 주 군 제2선거구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용암면
칠 곡 군 제1선거구	왜관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칠 곡 군 제2선거구	북삼읍, 석적읍, 약목면, 기산면
예 천 군 제1선거구	예천읍,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예 천 군 제2선거구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봉 화 군 선 거 구	봉화군 일원
울 진 군 제1선거구	울진읍, 북면, 서면, 죽변면
울 진 군 제2선거구	평해읍,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근남면
울 릉 군 선 거 구	울릉군 일원
경상남도의회의원(지역구 : 50)	
창 원 시 제1선거구	동읍, 대산면, 북면, 의창동
창 원 시 제2선거구	팔룡동, 명곡동
창 원 시 제3선거구	봉림동, 용지동
창 원 시 제4선거구	웅남동, 중앙동, 반송동
창 원 시 제5선거구	사과동, 상남동
창 원 시 제6선거구	가음정동, 성주동

창 원 시 제7선거구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동, 중앙동(마산합포구)
창 원 시 제8선거구	완월동, 자산동, 동서동, 성호동, 교방동, 노산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창 원 시 제9선거구	내서읍
창 원 시 제10선거구	회성동, 회원1동, 회원2동, 석전1동, 석전2동, 합성1동
창 원 시 제11선거구	구암1동, 구암2동, 양덕1동, 양덕2동, 봉암동, 합성2동
창 원 시 제12선거구	중앙동(진해구), 태평동,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병암동, 석동
창 원 시 제13선거구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진 주 시 제1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천전동, 성북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 주 시 제2선거구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진 주 시 제3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상대1동, 상대2동, 하대1동, 하대2동, 상평동
진 주 시 제4선거구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초장동
통 영 시 제1선거구	산양읍, 용남면, 도산면, 광도면, 육지면, 한산면, 사랑면, 미수동, 봉평동
통 영 시 제2선거구	도천동, 명정동, 중앙동, 정량동, 북신동, 무진동
사 천 시 제1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사 천 시 제2선거구	동서동, 선구동,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 남양동
김 해 시 제1선거구	생림면, 상동면, 북부동
김 해 시 제2선거구	대동면, 삼안동, 불암동
김 해 시 제3선거구	활천동, 동상동, 부원동
김 해 시 제4선거구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주촌면

김 해 시 제5선거구	장유1동, 장유2동
김 해 시 제6선거구	장유3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김 해 시 제7선거구	내외동
밀 양 시 제1선거구	부북면, 상동면, 산외면, 산내면, 단장면,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밀 양 시 제2선거구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가곡동
거 제 시 제1선거구	장평동, 고현동, 삼문동
거 제 시 제2선거구	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옥포1동, 옥포2동, 수양동
거 제 시 제3선거구	거제면, 사동면, 둔덕면, 동부면, 남부면, 일운면,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마전동
양 산 시 제1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강서동
양 산 시 제2선거구	동면,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양 산 시 제3선거구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의 령 군 선 거 구	의령군 일원
함 안 군 제1선거구	가야읍, 함안면, 군북면, 범수면, 여항면
함 안 군 제2선거구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칠원면, 산인면
창 녕 군 제1선거구	창녕읍,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창 녕 군 제2선거구	남지읍, 계성면, 영산면, 장마면, 도천면, 길곡면, 부곡면
고 성 군 제1선거구	고성읍, 삼산면
고 성 군 제2선거구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하이면, 상리면, 하일면
남 해 군 선 거 구	남해군 일원

하 동 군 선 거 구	하동군 일원
산 청 군 선 거 구	산청군 일원
함 양 군 선 거 구	함양군 일원
거 창 군 제1선거구	거창읍(중앙리, 대동리, 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정장리, 장팔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가지리, 상림리 원상동)
거 창 군 제2선거구	주상면, 용양면, 고제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상림리 상동)
합 천 군 선 거 구	합천군 일원

[별표 3]

시·도별자치구·시·군의회의원 총정수표(2,898명)

시 도	총 정 수
서울특별시	419
부산광역시	182
대구광역시	116
인천광역시	116
광주광역시	68
대전광역시	63
울산광역시	50
경 기 도	431
강 원 도	169
충 청 북 도	131
충 청 남 도	169
전 라 북 도	197
전 라 남 도	243
경 상 북 도	284
경 상 남 도	26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p> <p>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p> <p>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p>
<p><u><신 설></u></p>	<p>제8조의8(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p>

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각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⑤ 정당의 당원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선거여론조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선거일 전 20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⑦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
2.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가 이 법 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

⑧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관할 여론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2. 시·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 해당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⑨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이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⑫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p>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選舉日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被選舉權이 없다.</p> <p>1. ~ 4. (생략)</p> <p><신설></p>	<p>第19條(被選舉權이 없는 者) -----</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p>
<p>第22條(市·道議會의 議員定數)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정수는 그 管轄區域안의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이상의 國會議員地域選舉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選舉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選舉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p>	<p>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p>

	<p>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한다], 국회의원등의 배우자, 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본다.</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생략)</p>	<p>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④ ----- ----- ----- ----- -----.</p>
<p>1. ~ 4. (생략)</p> <p>5. <u>금고 이상의 형(제18조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한다)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u>----- ----- ----- -----</p>
<p>6. (생략)</p>	<p>6. (현행과 같음)</p>

<신 설>

⑤ ~ ⑪ (생략)

⑫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제4항제2호 내지 제6호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回報받은 서류를 選舉區民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⑬ ~ ⑮ (생략)

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舉運動禁止) <신 설>

① ~ ③ (생략)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 ⑪ (현행과 같음)

⑫ -----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

⑬ ~ ⑮ (현행과 같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

<p>3.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p>	<p>3.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따른 방송사업자</p>
<p>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p>	<p>4.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p>
<p>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p>	<p>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p>
<p>6.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p>	<p>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p>
<p><신 설></p>	<p>7.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p>
<p><신 설></p>	<p>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④ · ⑤ (생략)

⑥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⑦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제5항에 따라 보관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1.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있는 때

2.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⑨ 다음 각 호-----

-----제6항

-----.

1.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2. 선거여론공정심의위원회가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로부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거나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

⑧ (생략)

⑨ 제7항에 따른 이의제기, 자료 제출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연설원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보전할 비용 중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④ ~ ⑦ (생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② (생략)

<신설>

는 때

⑩ (현행 제8항과 같음)

⑪ 여론조사의 신고, 이의신청-----

-----.

第135條의2(選舉費用補填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61조제9항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

<p>③ (생 략)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⑨ (생 략) <u><신 설></u></p>	<p>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⑩ (생 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생 략)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한다.</p>
<p>⑤ (생 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생 략) ②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u>오후 4시</u>에 닫는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한다. ③ ~ ⑤ (생 략)</p>	<p>⑤ (현행과 같음) 第155條(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음) ②-----<u>오후 6시</u>----- ----- ----- ③ ~ ⑤ (현행과 같음)</p>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⑤ (생략)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 2. (생략)

⑦ · ⑧ (생략)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 ② (생략)

<신 설>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여권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파병되었거나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파병군인”이라 한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1. · 2.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第174條(開票事務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전투표기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②第1項에 規定된 行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2. (생략)

②第1項 各號의 1에 規定된 行위에 관하여 指示·勸誘·요구하거나 알선한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500만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생략)

-----3천만원-----.

第231條(財産상의 利益目的의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

-----5천만원-----
-----.

1. ~ 3. (현행과 같음)

②-----알선한 자(제26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7천만원-----
-----.

第232條(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5천만원-----
-----.

1. · 2. (현행과 같음)

②-----

-----7천만원-----.

③ (현행과 같음)

<p>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8. (생략) 9. <u>第85條(地位를 이용한 選舉運 動禁止)第2項 또는 第3項의 規 定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 계 한 者</u> 10. ~ 20. (생략)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1. (생략) 2. <u>제8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사람</u> ④ (생략) <u><신설></u></p>	<p>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제85조제3항 또는 제4항에--</u> ----- ----- ----- 10. ~ 20.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2. <u>제85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u> <u>운동을 한 사람</u>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85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u> <u>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u> <u>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u> <u>의 벌금에 처한다.</u></p>
<p>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p>	<p>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 ----- ----- ----- ----- -----</p>

1. (생략)

2. 제108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選舉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1. (현행과 같음)

2. 제108조제5항-----

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2제5항 및 제6항(제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

3.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③ -----

-----.

1. -----

다]의 規定에 의한 制裁措置
등

나. 第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
한 謝過文 또는 訂正報道文의
게재

다. 第8條의4(選舉報道에 대한
反論報道請求)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反論報道的 결정

라.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
정보도 등)제1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동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
보도의 결정

4. (생략)

③ · ④ (생략)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생략)

② 第81條第6項 · 第82條第4項 ·
第113條 · 第114條第1項 또는 第
115條에서 規定하고 있는 政黨
(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
정당의 대표자 · 정당선거사무소
의 소장, 국회의원 · 지방의회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候補者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4.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
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候補者의 配偶者,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選舉事務員, 會計責任者, 演說員, 對談·討論者, 候補者 또는 그 家族과 관계있는 會社 등이나 그 任·職員과 第三者[第116條(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規定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寄附를 指示·勸誘·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 제6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 · ④ (생략)

제260조(양벌규정) ①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

-----제261조

제9항제1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60조(양벌규정) ① -----

항·제5항, 제240조제1항, 제241조제1항, 제244조, 제245조제2항, 제246조제2항, 제247조제1항, 제248조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6조,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신설>

<신설>

-----제25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② (현행과 같음)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제23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공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생 략)

2.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또는 보도한 자(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⑦ -----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바. (생략)

사.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개표소)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아. (생략)

3. ~ 6. (생략)

⑤ · ⑥ (생략)

⑦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⑧ · ⑨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⑩ -----

-----.

----- 제8항
-----까지-----

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
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
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7항 전단에 따른 과
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
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
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
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
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
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
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
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
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
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

-----.

3. -----제10항-----

-----.

4. -----
-----제10
항-----

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

5. -----

-----제10항-----

-----.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

-----제261조제9항-----

-----.

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 · ② (생략)

③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비용의 공제·납입·징수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261조제7항을 준용한다.

第273條(裁定申請)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제1항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第271條(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61조제10항-----.

第273條(裁定申請) ① -----

----- 제11호 및 제3항·제5항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